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단5073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나6896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단50733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빚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피 고 B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9. 2. 12. D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자신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라고 소개하면서 “E이 서울 서대문구 F 외 3필지의 지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테니, 리베이트로 5,000만 원을 달라. 그 대신 원래 공사금액에 5,0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 원고와 E은 같은 날 공사금액을 3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건물철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피고가 E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억 5,000만 원은 당초 공사금액 3억 원에 리베이트 5,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G의 SC제일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에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E이 원고에게 철거공사에 착수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아, C이 수 차례 피고에게 “공사를 못 주겠으면 5,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는 “조금 더 기다려라. 정 안되면 5,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만 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인데, E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기망하여 E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E이 2019. 2. 12. 원고와 공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서울 서대문구 F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3,500만 원, 피고가 지정한 G에게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등 참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으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여 탈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제공자와 수령자 중 어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원고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원고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원고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 자체로 5,0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기망하여 E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